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6. 4 선고 2018가단1245(본소), 2018가단13347(반소)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 소유권이전등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망 A의 소송수계인 B

피고(반소원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최영호

변론 종결2019. 5. 7.

판결 선고2019. 6. 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전북 부안군 D 대 480㎡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10, 11, 12,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462㎡에 관하여 2014. 8.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전북 부안군 E 대 6㎡에 관하여 2014. 8. 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전북 부안군 F 전 2636㎡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28, 27, 26, 25, 24, 23, 22, 3,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4㎡에 관하여 2014. 8. 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전북 부안군 D 대 480m²에 관하여 1994. 8. 5.경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망 A은 전북 부안군 F 전 2636m²에 관하여는 1980. 4. 4.경, 전북 부안군 E 대 6m²에 관하여는 1992. 2. 21.경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망 A은 1994. 8. 5. 이전부터 2018. 11. 16. 사망할 무렵까지 전북 부안군 D 대 480m²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10, 11, 12,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462m²(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 피고는 1994. 8. 5.부터 현재까지 전북 부안군 E 대 6m²(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전북 부안군 F 전 2636m²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28, 27, 26, 25, 24, 23, 22, 3,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4m²(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 망 A은 2018. 11. 16.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원고 등은 2019. 3.경 이 사건 1 내지 3토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안지사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그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등 참조).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이 1994. 8. 5. 이전부터 이 사건 1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망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1994. 8. 5.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8. 5.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망인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 후 망인이 2018. 11. 16. 사망한 사실, 원고 등은 2019. 3.경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망인으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94. 8. 5.부터 이 사건 2, 3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1994. 8. 5.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8. 5.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 후 망인이 2018. 11. 16. 사망한 사실, 원고 등은 2019. 3.경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망인으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하여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함철환

별지